

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- 변경 사유 : ① 투자위험등급 변경 (4등급(보통 위험) → 5등급(낮은 위험))  
 ②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(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)  
 ③ 제1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
 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
 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
 ⑥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4. 5. 3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투자위험등급 변경	4 등급(보통 위험)	5 등급(낮은 위험)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</u> .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
요약정보

-	투자위험등급 변경	4 등급(보통 위험)	5 등급(낮은 위험)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80%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고 30%이하를 주식에 투자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80%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고 30%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



		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, 시장위험 등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, 시장위험 등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비용	동종 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1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 -	<u>2024. 3. 29. 기준</u>  <u>2024. 4. 18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1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4. 18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·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·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 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연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	연혁 업데이트	<신 설>	<u>2023.06.23 : 자투자신탁 추가(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투자신탁[채권]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(생략)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(현행과 같음)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	투자위험 산정기준 변경	<u>표준편차 : 5.19%</u>	<u>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)</u> 사

<p>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투자위험등급 변경</p>	<p>투자위험등급 : <u>4 등급(보통 위험)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 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&gt; 1) 설정된 후 3 년 경과된 경우 <u>표준편차</u></p>	<p><u>용) : 9.55%</u></p> <p>투자위험등급 : <u>5 등급(낮은 위험)</u></p> <p>- 위험등급 변경 내역 <u>2024.5.3 :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"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"에서 "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" 기준으로 변경</u> <u>최근 결산일 기준 3 년 수익률 변동성이 1%초과~10%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4 등급에서 5 등급으로 변경</u></p> <p>&lt;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 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&gt; 1) 설정된 후 3 년 경과된 경우 <u>위험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</u>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</p>	<p>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p>	<p>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&lt;신 설&gt;</p>	<p>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<u>&lt;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&gt; 기재</u>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동종 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1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/p>	<p>- -</p>	<p><u>2024. 3. 29. 기준</u>  <u>2024. 4. 18. 기준</u>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</p>	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	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



		분리과세한도 : <u>1,200 만원</u> 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200 만원</u> 초과시 종합과 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 택 가능 (단, <u>23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	분리과세한도 : <u>1,500 만원</u> 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500 만원</u> 초과시 종합과 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 택 가능 (단, <u>24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
--	--	--	--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13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4. 18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13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4. 18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13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4. 18.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제 25기(2022.12.31) 제 24기(2021.12.31)	제 26기(2023.12.31) 제 25기(2022.12.31)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